

제 398 호
1982.11.1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편 집 : 공 보 관 전 명 호
전 화 72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

- 제 2000 호 :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
제 2001 호 :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3
제 2002 호 :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4
제 2003 호 : 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5
제 2004 호 :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7

◎ 교육위원회규칙

- 제 263 호 :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 각급학교
수험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 32

< 이면계속 >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264 호 : 서울특별시공 · 사립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중 개정규칙	33
--	----

◎ 고 시

제 465호: 도시계획사업(시장)시행허가	34
제 466호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34
제 467호: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변경결정및지적승인	35
제 468호: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	35
제 469호: 도시계획사업(학교, 도로)시행자극소및교명변경승인 ...	36
제 470호: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	37

◎ 공 고

제 469 호 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실시계획공람공고	39
제 470 호 : 건설업(전문공사업)영업정지처분공고	40
제 471호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	40
제 473호: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	42
제 474호: 판인교부공고	42
제 475호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	43
제 476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변경실시계획공람공고	43

◎ 사 령

규 칙
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5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0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 2 호중 나, 통학정기승차권 다음에 “다, 노인소아정기권”을 신설한다.

제 26 조 제 2 호중 나, 학생정기여객운임 다음 “다, 노인소아정기운임”을 신설한다.

제 29 조 제 1 항 제 3 호중 유아: 6 세 미만의 자 다음, “다, 노인 65 세 이상의 자”를 신설하고 동조 제 2 항을 삭제한다.

제 33 조 2 중 “국유철도와 연락운송을 하는 경우의”를 삭제한다.

제 73 조 제 1 항중 “보통여객운임의 0.5 배”를 “보통여객운임의 2 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5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1 호

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6 조 제 2 항중 “5만원”을 “1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5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2 호

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
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중 별지 제 1 호 서식을 별지와
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중 “ 6 개월
간 ” 을 “ 평생 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달의 익월 1 일
부터 시행한다.

별지제 1 호서식

평 생 진 찰 권

성 명

남 여

일련번호

주민등록번호

주 소

서울시

구

동

번 지

호

아파트

동

호

19

년

월

일

서 울 특 별 시 립

병원장

주 의 사 항

1. 본권은 진료를 받을때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.
2. 본권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.
3. 본권은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재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6

서울특별시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003 호

서울특별시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(이하 “ 조 례 ” 라 한다)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환지방식) 환지방식은 평가식 환지 방법으로 한다.

제 3 조 (환지설계의 기준시점) 환지설계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 4 조 (환지의 위치) 환지는 가급적 원위치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, 이용상황, 환경등을 감안하여 대응한 위치에 비환지한다.

제 5 조 (권리면적 산출) ①정리후의 권리면적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 기준으로 한다.

$$Ei = \frac{Aiai(1-d)y}{ei}$$

단, Ei : 정리후 권리면적 (m^2)

ei : 정리후 각획지별 m^2 당지수

Ai : 정리전 토지의 면적 (m^2)

ai : 정리전 토지의 m^2 당 지수

d : 일반지의 평균 감보율

y : 일반지의 택지 이용증진을

②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로써 그 감보율이 평균 감보율의 1.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후 권리면적을 정한다. 다만, 비환지의 경우와 사도등 정리전 토지의 평가지수가 특히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6 조 (획지의 규모) 정리후의 획지는 용도지역등 토지이용 계획을 감안하여 1 택지가 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,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간선도로변의 획지는 $661 m^2$ 이상

2. 일반주택지는 $100 m^2 - 331 m^2$

3. 기존건물 존치시는 $90 m^2$ 이상

제 7 조 (환지의 앞면길이) 정리후 획지의 앞면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옆면 길이의 $1/3$ 이상으로 하고 그 앞면 길이는 건축법 제 33 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의 최소 앞면길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한다.

제 8 조 (과소토지의 기준)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불환지할 과소토지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66㎡ 미만, 건물이 없는 대지는 90㎡ 미만, 지목이 대지이외의 일반토지는 199㎡ 미만으로 하며, 사도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평가지수가 현저히 낮아 제 6 조에 규정한 획지의 규모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과소 토지로 한다.

제 9 조 (과소토지의 존치) ① 과소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에 권리면적을 산정하고 청산시 보류지를 평가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금전 청산한다.

② 환지계획 인가후 과소토지 소유자가 청산을 원할때는 환지처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환지의 분합) 토지이용계획 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는 종전토지 1 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소유자의 종전토지 수 필지를 1 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체비지)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4 조에 규정한 체비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범위의 면적을 공공용지,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위치에 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이동신고) 조례 제 12 조 및

제 14 조, 제 15 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13 조 (토지의 사용 및 관리)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다.

② 시행자가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에정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기타) 이 규칙에 정한 이외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6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004 호

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사무처리규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(이하 " 법. " 이라 한다) 제 68 조 및 각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(이하 " 조례 " 라 한다) 에 규정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" 징수청산금 "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되게 환지된 경우 증명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.
- ② " 교부청산금 "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된 경우 감평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.
- ③ " 불환지청산금 " 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토지에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.
- ④ " 상계청산 " 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" 환불 및 추정 " 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.

⑥ " 법규 " 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동법시행령과 조례를 말한다.

⑦ " 토지소유자등 " 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

⑧ " 환지 " 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.

제 3 조 (청산금의 가격) 청산금을 결정코자할 경우에는 제 48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인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청산한다.

제 4 조 (청산의 주관) ① 이 규칙이 정하는 청산은 도시계획국장이 주관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때에는 평가가격이 기재된 청산조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증감토지의 청산방법)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

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감면적에 제 3 조에서 정한 금액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

제 6 조 (사전청산) ① 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정지에 집합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.

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.

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법제 57 조 제 2 항에 의하여 환지에 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치 않을시는 결정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.

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 (별지 제 1 호 양식) 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, 납부기한,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7 조 (청산조서) 환지처분후 청산할 경우에는 총괄조서 (별지 2 호서식) 와 징수 또는 교부조서 (별지 제 3 제 4 호서식) 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등기열람)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열람하여야 한다

제 9 조 (권리별청산)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

권리자분별로 청산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청산대상자)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.

다만,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본다.

제 11 조 (상계) ①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계청산할 수 있다.

②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신청서 (별지 제 5 호서식) 에 의하고 청산금 상계처리색인대장 (별지 제 6 호서식) 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청산의 대리인) 집합주택의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)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

제2장 청산금의 징수

제14조(청산금 징수조서작성) 청산금을 징수코자 할 경우에는 청산금 징수조서(별지제3호서식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5조(납입고지서 발송) ①납입고지서(제7호서식)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납입개시 7일전까지 증환지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납입고지서의 착오 또는 사전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 및 납입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.

②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, 그 대상이 다량일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송달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송달방법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요령을 준용한다.

제16조(납기간등)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, 납부방법, 납부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징수청산금의 감면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18조(공시송달) ①제15조의 규

정에 의하여 송부된 고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.

②공시송달은 신문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만으로 할 수 있다.

제19조(이자등의징수) ①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년 12%의 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.

②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들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과 상계후 징수청산금 및 국공유지와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0조(조정결의전 징수) ①토지소유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청산금을 조정결의전에 징수할 수 있다.

②조정결의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 납기전 고지서 발행대장 및 징수부(별지9호양식)에 기재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사도의 징수청산금) ①지목이 도로로 환지처분된 사유토지중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환지된 토지전부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동토지에 발생하는 징수청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토지소유자들이 제1항에 의한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도권리 포기신청서(별지10호서식)

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 2 항에 의하여 권리포기 신청이 수리된 토지는 징수청산금을 면제하고 대신 당해 토지는 공도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④공도로 처리된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계획도로로 본다.

제 22 조 (수납소인) 납입필 통지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되면 징수부에 납입확인을 위한 소인을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독촉 및 채납처분등) ①납입 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 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(별지 11 호 서식)을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제 1 항의 기간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.

③압류 후에는 채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(별지 12 호 서식)을 발송하여야 한다.

④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채납처분할 수 있다.

제 24 조 (등기촉탁의 제한) ①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청산금에 상당한

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들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.

②제 1 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.

제 3 장 청산금의 교부

제 25 조 (청산금의 교부) ①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.

②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분은 공시송달할 수 있다.

③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당해토지등기부 등본 1 통

나. 청구자 인감증명 1 통다. 청구서(별지 제 13 호 서식)

④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채권양도서(별지 14 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과오납부 환불) ①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정리부(별지 제 15 호 서식)에 등재하고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등(별지 제 16 호, 제 17 호 서식)에 의하여 환불하되 납부일로부터 환불청구시까

지 년 12%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한다.

③ 납부영수증을 불실하였을 때에는 분실 각서로(별지제 18 호서식) 영수증에 가름할 수 있다.

제 4 장 불 환 지 청 산

제 27 조 (가 격 시 점)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.

다만,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토 지 의 평 가) ① 불환지의 청산에,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 28 조에서 정한 가격시점 현재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, 지목, 지적, 토질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된 2 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액의 평균치를 불환지 토지의 청산기준 가격으로 결정한다.

제 39 조 (합 병 처 리)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내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

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 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청 산 조 서) 불환지된 토지를 청산할 경우에는 불환지 청산조서(별지 제 19 호 및 제 20 호서식)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청 산 제 외 토 지) 불환지된 토지중 소유가 국공유인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치 않는다.

부 칙

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가지사업,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및 과징사무 취급요령(예규 제 409)은 이 규칙 공포일로 폐기된다.

③ (경과조치) 1975.12.31 이전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환지처분한 사업지구내의 불환지토지중 미청산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환지 또는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으로 청산한다.

. 청 산 금 상 계 신 청 서

(별지 5 호서식)

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 계 내 역

대 장 번 호	물 건 지	소유자	징 수 청 산 금	교 부 청 산 금	상 계 후 청 산 금 액	
					징 수	교 부

198

신청인 주소 구 동 번지
성명 인

서울특별시장 귀하

(별지 7 호서식)

토지특별회계

청산금 원부

년도:	지구	수납번호	
성명:	납입금액		
환지:	원		
주소:			
수납일부인			

수납은행 보관용

토지특별회계

청산금 납입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

본청

지구	년	월	수납번호	납부기한	년	월	일까지
종 전 의 토 지				환 지		증 평	납입금액
동 명	지 번	① 권리면적	동 명	지 번	② 환지면적	② - ①	원
주소:				성명:			
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년 월 일							
서울특별시				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분임징수관			
수납일부인							

※ 납부장소: 시 공과금 수납은행

본청 기획정리과 통보용

토지특별회계

청산금 영수증

년도:	지구	수납번호	
성명:	납입금액		
환지:	원		
주소:	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
수납일부인	은행	취급자인	

※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청산금 납부시 등기출납을 해드립니다

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에 대한 안내문

○ 징 수 청 산 금

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(중전토지면적-감보면적)보다 많은 경우,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본청산금 납입고지서는 징수청산금에 해당합니다.

○ 교 부 청 산 금

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,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※ 감보면적이란

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, 하천,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에 충당할 비용(채비지)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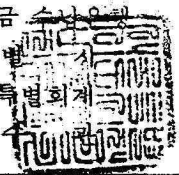
○ 징수청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,

- 1) 년12%의 이자를 가산징수합니다.
- 2)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한 채납처분을 받게 되며, 이 경우 채납처분비를 가산징수합니다.
- 3) 새로운 환지지번으로 등기촉탁이 보류되어 권리행사(소유권이전등)가 제한됩니다.
- 4) 구획정리사업종결이 채납기간만큼 지연됩니다.

○ 문의할 곳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구획정리과 (725 - 6290)
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	납입고지서및납입통지서									
취급처	서울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 No.										
지구명		일 금	억	천	백	십	만	천	백	십	원
과 목	청산금, 잡수입, 처분비, 채비지	청산금									
		채비지									
물건지		잡수입									
주 소		처분비									
성 명		계									

위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납부기한: 198 년 월 일
 납부장소: 시공과금 수납은행
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
 분 임 징 

(구획정리과 통보용)
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	원 부									
취급처	서울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 No.										
지구명		일 금	억	천	백	십	만	천	백	십	원
과 목	청산금, 잡수입, 처분비, 채비지	청산금									
		채비지									
물건지		잡수입									
주 소		처분비									
성 명		계									

198 년 월 일

은행 지점

(수납은행보관용)
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	영 수 총									
취급처	서울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과 No.										
지구명		일 금	억	천	백	십	만	천	백	십	원
과 목	청산금, 잡수입, 처분비, 채비지	청산금									
		채비지									
물건지		잡수입									
주 소		처분비									
성 명		계									

198 년 월 일

은행 지점

취급자인 수납일부인

(개인소지용) ※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.

51-20

제 398 호

시

보

1982.11.11

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	원 부										
회계년	서울시도시계획지구도시행정과	No.										
과목명		일	금	원	천	백	십	원	천	백	십	원
과목	청산금, 잡수입, 처분비, 폐비지	청산금										
		폐비지										
물건지		잡수입										
주소		처분비										
상명		비										
198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일부인												
(수납은행보관용)												

(별지 9호서식)

청산금남기전고지서발행대장인수파

[illegible]

(별지 10 호서식)

사 도 권 리 포 기 신 청 서

1. 부동산표시

구 동 호 도로 m^2
 (구획정리 사업지구)

2. 위 토지는 현황이 도로이므로 198 본인에게 납입고
 지한 청산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
 일체를 포기하오니 공도로 환지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신청인

주 소 :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①

첨부 : 1. 등기부등본 1 부

2. 인감증명서 1 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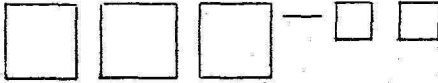
3. 청산금고지서 1 부

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

(별지 11 호서식)

(전 면)

우 편 엽 서



보내는 사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
우
표

받는 사람

(주소)

(성명)

(후 면)

독 축 장

물건지	구	동	로	가	번	지	호
책호	서기 198	년도	서기 198	년	월	수	지
토지구획사업 창 산 수 입	千	百	拾	萬	千	百	拾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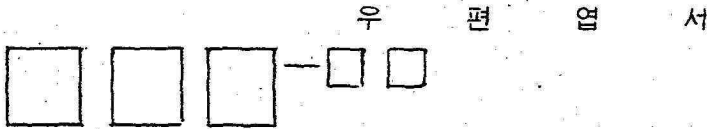
위에 적은 금액과 채납기간의 이자를 198 년 월 일까지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하실 때에는 재산의 압류처분을 실시하
는 경우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서기 198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(별지 12 호서식)

(전 면)



우

표

보내는사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
받는사람
(주소)

구

동

번지

호

(성명)

(후 면)

(문의처)

구획정리과 725-6290
725-4271최 고 장

귀하의 채납청산금(토지구획정리사업비)이 아래와 같사오니 월 일
까지 구획정리과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지구명	수납 번호	물건지	년 도	채납금액	채 납 처분비	채 납 이 자	비 고
						납부일까지 년 12%이자는 별도계산	

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
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
랍니다.

198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(별지 13 호서식)

청 구 서

일 금

단 지구내 동 번지 호

본인소유토지청산교부금임.

198

청 구 자 주 소 :

성 명 :

인

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

위 사실을 확인함.

구 획 정 리 과 장

(별지 14 호서식)

채 권 양 도 서

물건지소재 : 구 동 번지 호

감 평 :

교부청 산금 :

상기 물건지에 대한 감평된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
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.

198

양도자 : 주 소 :

성 명 :

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양수자 : 주 소 :

성 명 :

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첨부 : 인감증명서 각 1 통

서울특별시장 귀하

(별지 16호서식)

서울특별시

서 도 행 : 198 . . .
 수 신 :
 제 목 : 청 산 금 과 오 납 금 환 불 통 지 서

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을 다음과 같이 환불하겠으니 통지합니다.

구비서류 : 납부영수증, 인감증명서, 인감지참

환 지 확 정 지			청산결정액	기납부액	과오납금액	차 액	비 고
동명	지번	지 목					

서울특별시장

(별지 17 호서식)

부 원

제 호	년도 회계	도시계획국분임 징수관주관
채 주		

—금

단

년 월 일

년 월 일

징수관	작성자	
관	항	목

과오납금반환통지

제 호	년도 회계	도시계획국분임 징수관주관
채 주		

—금

단

상기 금액의 과오납금

반환 명령을 받행함

년 월 일

서울 특별 시

지

도시계획국분임
징수관성명

①

금고귀하

과오납금반환명령

제 호	년도 회계	도시계획국분임 징수관주관
채 주		

—금

단

상기 금액을 본명령

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암.

년 월 일

서울 특별 시

지

도시계획국분임
징수관성명

①

금고귀하

(별지 제 18 호 서식)

분 실 각 서

재산의 표시

본인은 청산금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였음이 틀림없으며 차후 영수증을 발견 또는 인수받았을 시도 재청구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.

각 서 자 주 소

성 명

① 인 감

198 . . .

서울 특별시장 귀하

(별지 19호서식)

물환지청산조서 (법제 52조처분지)

[illegible]

(별지 20호서식)

불환지청산조서 (법제 53 조처분지)

[illegible]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료 및 각급학교 입학수험료징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 11. 17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

◎ 교육규칙제 263 호

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 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료 및 각급학교 입학수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학 교 별	구 분	징 수 한 도 액	비 고
	종 별		
고등학교	교 사 료	2,500 원	
고등기술학교	수험 료	900 "	
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	"	900 "	
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중	"	2,500 "	
예술계학교			
방송통신고등학교	"	300 "	
고등국민학교	"	300 "	
기술학교	"	300 "	
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	"	300 "	
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예술	"	2,500 "	
계 학교			

부 칙 (1982.11.17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·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.11.17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

◎교육규칙제 264 호

서울특별시공·사립학교수업료및
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공·사립학교 수업료

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를 삭제하고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징수금액) 공립의 학교와 사립의 고등학교, 중학교, 국민학교 유치원, 고등기술학교, 기술학교, 고등국민학교, 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 과 같다.

(별표 1) 중 각종학교 (중)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 학교별		년, 기 (월) 별	수업료	입학금	적용지구	비 고
각종학교 (중)	일 반	년	150,600	5,400	1 급지	3 개월을 1 기로 징수함
		기	37,650			
	예 능	년	195,440	5,400		
		기	48,860			

(별표 2) 중 각종학교 (중)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 별		1 기 (3.1-5.31)	2 기 (6.1-8.31)	3 기 (9.1-11.30)	4 기 (12.1-익년 2월)
학교별					
각종학교	일 반	37,650	37,650	37,650	37,650
	예 능	48,860	48,860	48,860	48,860

부 칙 (1982.11.17)

이 규칙은 1983.1.1. 부터 적용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5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공고제 269 호(81.10.14)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 공고된 강동구암사동 480-1 번지 현대종합시장의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권한위임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1.15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자 : 강동구암사동 480-1
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
 도시계획사업 (시장)
 현대종합시장
 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 강동구암사동 480-1
 풍암상사(주) 김해관
 라. 사업의 규모

1) 지 적 : 1,000평 (3,306 m^2)

2) 건축내역

기 준 : 4,016.96 m^2 증 축 : 1,302.09 m^2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'82.11.20-'83.11.20.

바. 사용할 토지의 명세

강동구암사동 480-1(지적 3,306 m^2)

소유자 : 김 해 관

사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6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11.16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
 중구충무로 4 가 12-1
 유원건설(주) 대표 최 효 석
 중구충무로 1 가 53-1
 (주) 제일은행 대표 이 필 선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 가. 위치 : 영등포구당산동 4 가 91

나. 면 적 : 17,693.6 m^2

다. 규 모

아파트 11 층 2 동, 10층3동360세대
상가 3층1동의 부대복리시설

4. 사업시행기간 : 82.11-83.11.3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7 호

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

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

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및 제 6 조 1.항 1 호,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 3 조 3 항 및 5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와 경기도 고양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11.17.

서울특별시장

○ 고속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시 설 명	규 모	위 치	비 고
기정	고속철도 (지하철 3 호선본선)	L = 33.5 km	벽제 - 양재동	
변경	"	L = 33.5 km	"	경기도고양군지축리476 일대, 폭원 23 m - 29.5m → 11 미터 연장 900 m 구간

○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8 호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

문화재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

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8 조 및 동시행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1982.11.18.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목록

종 별	지정번호	명 칭	소 재 지	소 유 자
지방유형	제 49 호	봉천동 마애 미륵불	관악구 봉천동	국 (문교부)
문 화 재			산 4 의 2	
"	제 50 호	양효안공신도비 부묘소	도봉구 방학동	경기도양주군주내면만송리
			산 63-1	470 안민용외 17 명
지방기념물	제 5 호	손기정 월계관수	중구 만리동	학교법인 양정의숙
			2 가 6-1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6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, 도로) 시행자
주소 및 교명변경 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82호(78.8.1)
및 서울특별시고시제 515호(78.10.4)
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
도로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
24 조 및 25 조 동법시행령 제 25
조와 건설부고시제 521호(81.12.31)
에 의거 이를 변경하고 다음과
같이 고시한다.

1982. 11.19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장서구내발산동

산 59-2의 8 필 및 동소 내발산동
436-3 부터 산 58 까지
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, 도로)
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10,022.06평
및 $B = 12 m$ $L = 225 m$

4. 시행자주소 및 교명변경 사항

○ 당초 : 충남당진군송악면가학리395
학교법인 금용학원 이사장 김형진
교명 : 우진중, 여고

○ 변경 :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
산 59-2 학교법인 금용학원 이사장
김형진 교명 : 덕원여자중고등학교

5. 사업시행기간 :

78. 9. 4 - 83. 6.30.

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,
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 :
별첨토지조서 (생략)

7. 허가내용 : 별첨허가도서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0 호

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

1. 서울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2 가구역, 마포로제 1 구역 5 지구 및 16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5 조, 동법시행령제 7 조 및 도시계획법제 12 조규정에 의

가. 을지로 2 가 구역

1) 지구별조서

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11. 22.

서울특별시장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비 고
1	중구삼각동 66 - 1 번지일대	6,771 m^2	
2	" 남대문로 1 가 19 "	2,919 m^2	
3	" 삼각동 36 - 1 "	1,209 m^2	
4	" " 40 - 1 "	2,852 m^2	
5	" " 21 - 2 "	861 m^2	
6	" " 34 "	1,331 m^2	
7	" 수하동 35 "	1,175 m^2	
8	" " 7 "	1,684 m^2	
9	" 삼각동 25 "	1,803 m^2	
10	" 을지로 2 가 9 - 1 "	5,781 m^2	
11	" 삼각동 36 - 2 "	553 m^2	문화재 보존지구
12	" 수하동 50 "	4,127 m^2	
13	" " 30 "	3,433 m^2	
14	" " 17 "	3,218 m^2	
15	" 을지로 2 가 36 - 1 "	6,764 m^2	
16	" 장교동 39 "	15,096 m^2	
17	" 을지로 2 가 50 - 1 "	6,920 m^2	

2) 건축계획

구분	지구명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높이	용도	배열	건폐율	용적율	비고
기정	16	1,996 m^2	759 m^2	12,786 m^2	58 m	사무실	별첨	38 %	641 %	3 동
	17	2,634	1,054	14,012	24	"	"	40	532	
	18	4,064	1,731	25,965	44	"	"	43	639	
	19	1,144	570	7,980	47	"	"	30	698	
	20	2,225	826	17,794	72	"	"	37	800	
변경	16	15,096	-	-	102	"	"	40 %	700 %	
								이하	이하	
기정	21	3,748	1,782	24,677	47	"	"	48 %	659 %	
	22	3,539	1,435	24,446	54	"	"	41	680	
변경	17	6,920	-	-	95	"	"	40 %	790 %	
								이하	이하	

3) 도로계획

구분	노선명	폭원	연장	기점	종점
신설	중로 2 류 195 호선	15	90	중구남대문로 1 가 20	중구삼각동 105
	" 196 "	15	192	" 수하동 1 - 1	" 을지로 2 가 45-2
신설	중로 3 류 140 "	12	100	" 삼각동 59 - 1	" 삼각동 103-3
	" 141 "	12	140	" " 105	" 수하동 12-2
	" 142 "	12	75	" 수하동 102-2	" 을지로 2 가 8
	" 143 "	12	340	" 수하동 50	" " 74
	" 144 "	12	60	" 을지로 2 가 18-2	" " 13-2
	" 145 "	12	130	" 삼각동 7-1	" 삼각동 30-1

4) 주차장계획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제 1 주차장	중구수하동 65 일대	1,645 m^2	
제 2 주차장	" 삼각동 110 "	862 m^2	
제 3 주차장	" " 101 "	709 m^2	
계		3,216 m^2	

나. 마포로제 1 구역 제 5 지구 및 제 16 지구

1) 건축계획

구 분	제 5 지 구		제 16 지 구	
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
대 지 면 적	3,879 m^2	3,142.3 m^2	1,875 m^2	1,824.5 m^2
건 축 면 적	1,551 m^2	-	750 m^2	-
연 면 적	32,574 m^2	-	15,750 m^2	-
높 이	55(15/3)	15 층 이하	55 (15/3)	15 층 이하
용 도	업무및종교시설	업무시설	업무시설	업무시설
배 열	별첨도면	전면도로에서 7 m 이상후퇴	별첨도면	전면도로에서 6 m 이상후퇴
건 폐 율	40 %	45 % 이하	40 %	45 % 이하
용 적 율	670 %	670 % 이하	670 %	670 % 이하

비 고 가분할측량 결과 대지면적의 감소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69 호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54 호 (82.8.30) 및 동고시 제 388 호 (82.9.22)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에 대하여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판제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170-2 소신 여객자동차주식회사 (68-2127)

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.

1982. 11. 11.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1. 사업시행위치 : 서구 방화동 657-1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소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
3. 규 모 : 대지 (1408 m^2) 건물 지
하 1 층지상 2 층 (164.46 m^2)

4. 사업시행허가신청자 소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(대) 조영달

5.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1개년간

서울특별시공고제 470 호

건설업 (전문공사업) 영업정지처분공고

건설업법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업체의 건설업 (전문공사업)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

1982. 11. 15.

서울특별시장 김성배

“ 다 ”

면허번호	상호	대표자	영업소소재지	영업정지기간	영업정지사유	근거법규
경기 01-108 서울 03- 45 경기 05-165	미 왕 기업(주)	윤석도	관악봉천본 동 912-18	82.11.15- 83. 5.14 (6개월간)	○ 무면허업자에 게 하청 ○ 하청대금 미 지급	건설업법 제 37조제 2항 제 4호 및 제 5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1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96 호 (79.5.10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64 호 (81.10.7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(82.2.20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변경된 동대문구 면목동 49-3외 5필지 토

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 제 10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521 호 (81.12.31)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.

2. 관제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공업전문대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제인에게 공람한다.

1982. 11. 1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

1) 당 초 : 동대문구면목동 49-3

2) 1 차변경 : 동대문구면목동 49-3 외
2 필지3) 2 차변경 : 동대문구면목동 49-3 외
5 필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

○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서일공업
전문대학

○명칭 : 서일공업전문대학 시설확충

다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
○면적 (토지) :

1) 당초 - 6,826.20 m^2 2) 1 차변경 - 8,924.20 m^2 3) 2 차변경 - 10,670 m^2

○규모 (건물) :

1) 당초 : 건축면적 - 576.94 m^2 연면적 - 629.27 m^2 2) 1 차변경 : 건축면적 - 1,256.32 m^2 연면적 - 3,997.79 m^2 3) 2 차변경 : 건축면적 - 1,492.77 m^2 연면적 - 4,785.29 m^2 라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 서울특별시
동대문구 면목동 49-3

학교법인세방학원이사장 이 경 호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○착수년월일 : 81.10.13

○준공예정일 :

1) 당 초 - 82.2.28

2) 1 차변경 - 82.12.31

3) 2 차변경 - 83.12.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
지지목, 지적 및 토지 소유자와
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학 교 명	소 재 지	지 번	지 목	지 적 m^2	토지소유자주소, 성명	소유권이외의 권 리 명 세
서 일 공 업	동대문구 면목동	49-3	대	6,826.20	학교법인세방학원	없 음
	"	37-1	과수원	770	"	"
	"	16-3	임	1,328	"	"
	"	1322-7	구	423	국 유	"
		1322-14	"	491.40	"	"
		1322-16	"	831.40	"	"
계				10,670 m^2		

사. 공람기간 : 1982.11.17 ~ 1982.
11.30 (14일간)아. 기타 상세한것은 동대문구청 도시
정비과와 서일공업전문대학교 서무
과에 문의할것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3 호

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

허가를 취소하고 동법제 26조에 의거
다음과같이 공고한다.

1982. 11. 17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조 및 동법
시행령 제 18조 제 3 호에 의거 제조업

서울특별시장

업 체 명	소 재 지	대 표 자	허가번호	제 조 구 분	취 소 사 유
봉신평업(주)	신도림 390-7	서 정 인	1-6-24	소형 교류 전 등 기류	전기용품안전관리 법 제 7 조 위반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4 호

관인교부공고

1982. 11. 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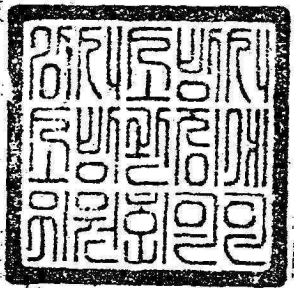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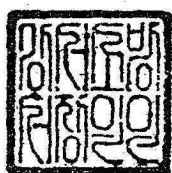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강서소방서장의 직인을 관인규정 제 5
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
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함을 동규
정제 9 조 및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
고한다.

1. 사용일자 : 1982. 12. 1

2. 교부작인 : 강서소방서장의 인

강서소방서소방관징계위원
회의 인

인 영			
공인명	강서소방서소방관징계위원회인	강서소방서장의인	강서소방서제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고시제 182 호 (73.11.26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산동 370-10 호 ~ 373-7 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미공고로 갈음하며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람.

1982. 11. 19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73-10 호 ~ 373-7호까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3. 사업의규모 : 도로폭 15 m 연장 260 m
4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정비진흥회회장 이 윤 화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착공일 :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

준공일 : 83. 5. 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

마포구청도시정비과 비치

7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1 항의관계인주소성명 : 마포구청도시정비과비치

8. 공람기간 및 장소

공람기간 : 82.11.24 , 1982.12.7

공람장소 : 마포구청도시정비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76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404 호 (82.10.4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사업변경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내발산동 715 학교법인 홍신학원 (T66-1450) 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.

1982. 11. 19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	변경후 (건물지하1층 지상5층 3179.655 ㎡)
1. 사업시행위치 : 강서구내발산동 715	4. 사업시행허가신청자 : 학교법인 홍신학원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및 명칭 화곡고등학교	5.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1 개년
3. 규 모 : 변경전 (건물지하1층지상5층 2541.78 ㎡)	간. 끝.

사 령

1982.11.15.

령제 584 호

지하철 운영 사업소
지 방 통 신 기 사

정 윤 순

총무과 파견근무를 명함. ('82.11.15 - '83.5.31)

1982.11.16.

령제 585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
	부 서	직 급		
심 정 섭	경찰국면허과	지방별정직 6 급상당 (전산처리사)	경 찰 국 면 허 과	지방별정직 7 급상당
김 현 국	"	"	"	"
임 동 선	"	"	"	"
강 환 설	"	"	"	"
이 병 철	"	지방별정직 7 급상당 (기계처리사)	"	지방별정직 8 급상당
남궁민철	"	"	"	"
안 교 성	"	"	"	"
윤 정 만	" (2호봉)	"	"	신 규

1982 11.17		령 제 586 호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정 태 승	내무국 근무를 명함. 정부합동민원실 파견근무를 명함. (82.11.17 - 83.11.16)	새 마을 지도자	지방행정 사무관
김 현 국	"	주 택 기 획 과	지 방 행 정 주 사
장 문 학	"	정 책 조 정 담 당 관	"
우 종 태	"	업 무 과	"
윤 병 규	"	성 북 구 건 축 과	지방건축기사보
차 일 환	상하수국 근무를 명함.	수 원 기 전 과	지 방 행 정 주 사
권 대 경	도시계획국 근무를 명함.	성 동 구 도시 정비 과	"
최 경 규	건설관리국 근무를 명함.	종 로 구 건설 관리 과	지방행정주사보
박 기 현	정부합동민원실 파견근무 해제 강동구 근무를 명함.	강 남 구 건 축 과	지방건축기사보

1982년 11 월 18 일 자	령 제 587 호	1982 년 11 월 15 일 자	령 제 588 호
중구기획감사과 지 방 행 정 주 사	오 종 근	관악구신림 6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	이 주 홍
기획관리실 (올림 픽 준비 기획 단) 파견 근무를 명함. (82.11.18 - 83.5.17)		대전시 전출을 명함.	
공 보 관 지 방 행 정 주 사 보	채 수 영	1982 년 11 월 17 일 자	령 제 589 호
성북구 파견 근무를 명함. (82.11.18 - 83.5.17)		종 로 구 지 방 농 림 기 사	한 희 택
성북구삼선 2 동 지 방 행 정 주 사 보	김 중 현	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
공보관 파견 근무를 명함. (82.11.18 - 83.5.17)		은 평 구 지 방 농 림 기 사	윤 강 배
		종로구 근무를 명명함.	
		서 대 문 구 지 방 농 림 기 사	양 상 옥
		은평구 근무를 명함.	

1982년 11월 19일자

령제 590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라종웅	기획관리실	강서구새마을과	지방행정주사
안덕희	"	동작구동작동	"
임상덕	"	중구산업과	"
홍중기	보건사회국	내무국행정과	"
백위준	산업경제국	중구주택과	"
조만형	건설관리국	용산구총무과	"
이성문	교통국	강동구산업과	"
남정록	내무국	서대문구새마을과	"
이근도	종합민원실	재무국세무지도과	"
이윤호	"	지하철건설본부전기과	"
이상두	지하철건설본부	북부건설사업소	"
양재평	지하철운영사업소	종로구주택과	"
김선범	세종문화회관	교통국운수2과	"
김선장	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	산업국연료과	"
김정현	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	중구필동	"
김응식	서대문병원	성북구길음1동	"
박영종	강서구보건소	도시계획국기획정리과	"
배호	종합건설본부	건설관리국도로과	"
김창수	중구	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	"
허진	성북구	영등포구신길5동	"
정재진	은평구	종합민원실	"
오장섭	구로구	강서구보건소	"
황차웅	종로구	중구총무과	"
고광만	동작구	지하철운영사업소	"
김삼만	강동구	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	"
소순곤	기획관리실	도봉구쌍문1동	지방행정주사보
황대성	"	강동구잠실4동	"
김태두	"	내무국문화과	"
안용기	도시계획국	강서구민방위과	"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권주철	교통국	보건사회국사회과	지방행정주사보
임종남	건설관리국	산업경제국상공과	"
남효권	종합민원실	구로구청소과	"
김상호	"	내무국총무과	"
정철원	구의수원지사무소	도봉구도봉1동	"
김기춘	서울시립대학	민방위국민방위과	"
이안기	종로구	은평구진관외동	"
박활	"	서대문구홍제1동	"
송교준	중구	성북구총무과	"
박래천	"	관악구산업과	"
배영필	강남구	관악구봉천6동	"
박범순	강동구	구의수원지사무소	"
신홍주	공무원교육원(행정서기)	영등포구세무1과	지방행정서기
권태섭	종합건설본부	관악구신림7동	"
안치명	"	성동구하왕2동	"
안재열	용산구보건소	구의수원지사무소	"
박갑윤	장묘사업소	종로구기획감사과	"
서창곤	내무국	강동구총무과	"
허수영	"	종합건설본부	"
조관목	종로구	종합종말처리사업소	"
장운채	중구	근로자회관	"
안병준	용산구	도봉구월계1동	"
남상천	구로구(지방행정서기)	공무원교육원	행정서기
신남균	관악구	용산구보건소	지방행정서기
조남명	강남구	동부건설사업소	"
정기섭	"	용산구세무2과	"
문영자	강동구	자동차관리사업소	"
정은애	"	관악구시민봉사실	"
정행균	동대문구	중구시민봉사실	"
노청덕	세종문화회관	종로구세종로동	지방행정서기보

령제 595 호

서 대 문 구
지 방 토 목 기 좌

유 학 조

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1982.7.19 자 견책처분(발령제 381 호)을 취소함.

령제 596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최 용 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공 원 녹 지 과 공 원 관 리 계 장	지 방 농 림 기 좌
김 실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종 로 구 공 원 녹 지 과 장	"
박 용 목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은 평 구 "	"
김 영 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관 악 구 "	"
김 용 태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성 동 구	지 방 농 림 기 사
강 기 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관 악 구	"
박 승 돈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	중 구	"
이 충 열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	영 등 포 구	지 방 건 축 기 좌
서 원 복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	"	지 방 건 축 기 원 보
홍 순 구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	성 복 구	지 방 건 축 기 사
이 승 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, 3	"	지 방 건 축 기 사 보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진준	호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.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1,2,3 호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.	강 남 구	지방건축기사보
서울특별시 지방건축기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근 무를 면함. (82.11.19 - 83.11.18) 주택개량과 지방건축기사보 대통령경호실 파견근무를 명함. (82.11.19 - 83.11.18) 1982년 11월 20일자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령제 597 호 양 갑 이 종 택 명제 598 호 김 영 달 이 희 진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윤 주 오 김 현 교 신 현 평 유 진 상 령제 599 호 최 중 균			

지하철건설본부

이 창 개

1982년 11월 22일자

령제 600 호

지방토목기정

동작구건설국장

이 평 제

지방토목기정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지하철건설본부 건설 1 과장

1982년 11월 23일자

령제 601 호

지하철건설본부

남 제 환

유 경 택

지방토목기정

종합기술시험연구소

1 호 봉

지방화공기사보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